



20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이승희
서 기 고영기

1. 조 직

- 위 원 장 : 이승희 • 서 기 : 고영기 • 회 계 : 이대봉 • 총 무 : 김형국
- 지도위원 : 백남선
- 위 원 : 김종혁 송귀옥 김상현 권성수 권택성 최수용 강의창 진용훈 현상민 김장교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23(금) 11:1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 이승희 목사, 지도위원 : 백남선 목사, 서기 : 고영기 목사, 회계 : 이대봉 장로,
총무 김형국 목사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6. 11(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서기 부재로 임시 서기에 김종혁 목사를 선임하다.

② 임시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③ 위원장이 일련의 총신상황을 보고하다.

④ 본 위원회에 맡긴 수입사항에 대해 2개의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가. 1소위원회(정관개정 외 기타수입사항) : 백남선 목사, 김종혁 목사, 송귀옥 목사, 김상현 목사,
권성수 목사, 권택성 장로, 최수용 장로(7명)

나. 2소위원회(총신사태관련자 처벌 및 학내활동 노회지도 관련) : 고영기 목사, 이대봉 장로,
김형국 목사, 강의창 장로, 진용훈 목사, 현상민 목사, 김장교 목사(7명)

소위원회 임원조직을 위해 정회하다. 오전 11시 25분.

위원장 사회로 속회하다. 오전 11시 35분.

- ⑤ 1소위원회 임원조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소위원장 : 김상현 목사, 서기 : 권택성 장로, 회계 최수용 장로
- ⑥ 2소위원회 임원조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소위원장 : 고영기 목사, 서기 : 김장교 목사, 회계 : 이대봉 장로
- ⑦ 차기 전체회의는 2019년 7월 15일(월) 오전 11시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7. 15(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1소위원회 보고를 소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하니 자구를 수정하여 차기회의에 완전 보고하기로 하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
가. 제5조 (정관의 변경) 제1항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
나. 이하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일괄 수정하다.
- ③ 제2소위원회 보고를 서기 김장교 목사가 보고하고, 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부연설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15인 재단이사(감사포함)하기로 하되 2019년 7월 30일(화) 오전 11시 소환하여 소명을 하기로 하다. 은퇴이사는 오후 2시로 하기로 하다(은퇴이사 : 김승동, 하귀호, 문찬수, 박재선, 김영옥, 송춘현).
나. 교수 및 직원 조사의 건은 함께 조사하기로 하되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이재서 총장을 총장실에서 면담한 후에 교수 및 직원들 처리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다.
- ④ 차기 전체회의는 2019년 8월 1일(목) 오후 1시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8. 1(목)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아래 내용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가. 제1소위원회 보고(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 중 제5조 (정관의 변경) 제1항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
- ② 제2소위원회 보고를 서기 김장교 목사가 보고하고, 위원 현상민 목사가 부연설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7월 23일(화) 오전 11시, 이재서 총장과 소위원들이 면담하였고, 총장의 교수들에 대한 징계의 의견과 교수들의 화합을 위한 탕평책을 하고 있다는 소견을 청취하다.
나.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16명 중, 출석한 8명에 대하여 질의하고 각각 답변을 듣다.
다. 불참한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를 8월 8일(목) 오전 11시에 재소환하기로 하다.
라. 교수에 관한 조사처리 문제는 3인을 조사하기로 하고, 8월 8일(목) 오후 1시에 소환하기로 하였으나 교수들의 인사이동으로 학교측과 상의하여 소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하다.
- ③ 제1소위원회 보고를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하고, 위원 백남선 목사가 부연설명하다.



가. 2장 7조, 3장 20조, 5장 36조, 6장 100조 에 대하여 3차 전체회의의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다.

나. 총신대학교 기획실장 유정욱 교수의 참석으로 학교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다.

a. 제48조(퇴직수당 등) 교직원 퇴직제도를 두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단, 필요시 희망퇴직에 관한 세칙을 별도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

b. 제88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60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경우는 60세로 한다.

④ 감사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회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임시이사가 들어와서 재단이사 처벌 등의 일을 마치고, 총장을 세우는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본 위원회가 총신조사 처리와 정상화의 일들을 처리해 나갔음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다.

⑤ 차기 전체회의는 2019년 8월 21일(수) 오후 1시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9. 8. 21(수)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1소위원회 보고를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③ 제2소위원회 보고를 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보고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④ 제104회 총회 보고서 내용은 금일 2소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일임하기로 하다.

⑤ 천서검사위원회에서 총신사태 관련자에 대해 천서문제에 대하여 의뢰하였기에 15인 위원 전체회의에서는 전 총신대 법인이사과 감사의 총대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를 하기로 결의하다.

⑥ 차기 전체회의는 2019년 9월 5일(목) 오후 12시 30분에 GMS에서 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9. 9. 5(목) 12:30

☞ 장 소 : GMS 회의실

☞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아래 내용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가. 전 총신대 법인이사과 감사의 총대에 대해서는 잠정보류 하기로 결의하다.

② 제2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다.

가.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은퇴목사 포함) 서명된 사과문을 받기로 하다.

나.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을 총회 석상에서 사과시키기로 하다.

다. 불참자(사과문 제출과 총회 석상 사과를 거부하는 자)는 해 노회에서 징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③ 재단이사 사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 재단이사 총대는 천서하여 주도록 천서검사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유00 목사, 정00 목사, 홍00 목사).

④ 재단이사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재단이사과 감사는 천서제한을 천서검사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이00 목사, 주00 목사).

- ⑤ 총신대 전, 재단이사 중 총대가 아닌 꺾00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로 하여금 징계하게 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⑥ 총회지시를 반한 교수에 대한 처리 건은 학교와 교수들이 보인 정상화의 노력을 보았기에 총장에게 맡겨 엄히 경고하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결의하다.

2) 정관개정 외 기타수임사항 관련 <제1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9. 7. 9(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학교법인 총회신학원 정관을 전임자 때 개정한 법안은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03회기 총회 이후 개정안(별지) 대로 받기로 하다.
 - ③ 학교법인 총회신학원 정관 개정안 일부를 변호사로 하여금 자문받기로 하다.

3) 총신사태관련자 처벌 및 학내활동 노회지도 관련 <제2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9. 6. 25(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조사처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 7월 15일(월)에 본 소위원회에서 총신문제에 조사할 재단이사 와 부역교수와 직원의 조사 내용을 아젠다로 올리기로 하다.
 - ② 다음 소위원회 모임은 7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9. 7. 15(월) 09: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위원회란 명칭을 검토하기로 건의하다.
 - ② 조사 처리의 건은 재단이사 및 교수와 직원을 분리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 ③ 15인 재단이사(감사포함)하기로 하되 2019년 7월 30일(화) 오전 11시에 소환하여 소명을 하기로 하다. 은퇴이사는 오후 2시로 하기로 하다(은퇴이사 : 김승동, 하귀호, 문찬수, 박재선, 김영욱, 송춘현).
 - ④ 교수 및 직원 조사의 건은 함께 조사하기로 하되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에 이재서 총장을 총장실에서 면담한 후에 교수 및 직원들 처리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다.

(3) 제3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9. 7. 23(화) 11:00
- ☞ 장 소 : 총신대학교
- ☞ 결의사항
 - ① 총회 지시에 반하는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총장과 보직 교수들과 의견을 나눈다.



② 총장의 전교직원의 화합을 위하여 총회 지시에 반하는 교직원 은 제외하고 직원간의 탕평책을 나누다.

③ 기타 총신대를 위한 총회의 역할을 나누다.

가. 재원확보 나. 교수충원문제

(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7. 30(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금일 소환에 출석한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에게 4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다.

가. 질의1.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한 불법성 문제

나. 질의2. 전 총장 추대를 통한 총신 사유화에 대한 문제

다. 질의3. 용역 동원은 누구의 결정 사안인가?

라. 질의4. 총회 지시에 왜 불응하였는가?

(5) 제5차 소위원회(법인이사 소환조사)

☞ 일 시 : 2019. 7. 30(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출석요청하였으나 8명 출석하였고, 8명 불참함을 확인하다.

가. 출석자 : 하귀호(은퇴), 홍성현, 정중현, 유태영, 박노섭, 김남웅, 임홍수, 주진만(감사)

나. 불참자 : 김승동(은퇴), 김영옥(은퇴), 박재선(은퇴), 문찬수(은퇴), 송춘현(은퇴), 곽효근, 이상협, 이균승

② 출석한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에게 질의하고, 각각 개인의 답변을 듣다.

③ 제103회 총회에 현의된 재단이사 박노섭 목사에 관한 문제는 개별의 문제이므로 박노섭 목사에게 문서로 소명을 제출토록 하다.

오후 1시 50분 정회 하고 식사 후 속회하기로 하다.

속회 오후 2시 20분 강의창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④ 조사처리 문제에 대한 결의사항

가. 소환에 응한 사람과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징계 수위를 차별하기로 하다. 고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2차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나. 2차 소환일자 는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으로 하기로 하다.

다. 조사처리에 관한 건은 전 재단이사의 사과를 전제로 하기로 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문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개인 서명토록하다. 총회 석상에서 공개사과 하기로 하다.

라. 사과하지 않은 재단이사는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징계는 총회에 결정에 따르기로 하다.

마. 총대가 아닌 재단이사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⑤ 교수에 관한 조사처리 문제는 3인을 조사하기로 하고, 8월 8일(목) 오후 1시로 소환하기로 하다.

(6) 제6차 소위원회(법인이사 소환조사)

☞ 일 시 : 2019. 8. 8(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가.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출석요청하였으나 8명 출석하였고, 8명 불참함을 확인하다.

a. 출석자 : 하귀호(은퇴), 홍성현, 정중현, 유태영, 박노섭, 김남웅, 임홍수, 주진만(감사)

b. 불참자 : 김승동(은퇴), 김영옥(은퇴), 박재선(은퇴), 문찬수(은퇴), 송춘현(은퇴), 곽효근, 이상협, 이균승

② 학생에 관한 조사처리는 전 총학생회장 김현우와 전 총신신대원 비상대책위원장 곽한락을 2019년 8월 21일(수) 오후 2시에, 교수에 관한 조사처리는 이상일 교수와 심상법 교수를 동일 오후 3시에, 은퇴한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5명(3차 재소환)은 오후 3시 30분에 각각 소환하기로 하다.

오전 11시 05분 김형국 목사의 기도로 소환조사를 시작하다.

③ 금일 출석한 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곽효근 목사, 이상협 목사에게 질의하고, 각각 개인의 답변을 듣다.

오후 12시 20분 이대봉 장로의 기도로 소환조사를 마치다.

④ 금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균승 장로에게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다.

(7) 제7차 소위원회(교수, 학생 소환조사)

☞ 일 시 : 2019. 8. 21(수)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김형국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임원회 관계로 강의창 장로, 이대봉 장로, 진용훈 목사의 이석을 허락하다.

② 전 총신대학신대원 비상대책위원장 곽한락 전도사와 전 총학생회장 김현우 학우에게 학내 소요사태, 전산실 점거한 이유와 신나문제와 혼숙문제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다.

③ 이상일 교수와 심상법 교수에게 학내문제에 비롯된 7년 교육과정문제와 학생과의 문제와 교수 간의 문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다.

④ 차기 회의는 2019년 9월 5일(목) 오전 9시에 GMS에서 하기로 하다.

(8) 제8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9. 5(목) 09:00

☞ 장 소 : GMS 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은퇴목사 포함)에 서면된 사과문을 받기로 하다.

②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을 총회 석상에서 사과시키기로 하다.

③ 불참자(사과문 제출과 총회 석상 사과를 거부하는 자)는 해 노회에서 징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④ 정상화의 건은 다음과 같이 청원하기로 하다.
 - 가. 각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의 학내활동에 대해 적극 관리, 감독하기로 청원하다.
 - 나. 전국교회에서 총신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청원하다.
- ⑤ 총회지시를 반한 교수에 대한 처리 건은 학교와 교수들이 보인 정상화의 노력을 보았기에 총장에게 맡겨 엄히 경고하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결의하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제1장 총 칙</p>	<p>제1장 총 칙</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u>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u>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산과 회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자 산</p> <p>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 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임 원</p> <p>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이사 4년</p>	<p>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u>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u> <개정 2017.09.15></p> <p>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u>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u></p> <p>②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u>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총회의 인준을 얻어</u>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p> <p>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이사 4년</p>	<p>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u>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이하 "총회"라 한다) 직할 하에서</u>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교단의 헌법에 <u>입각하여</u>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u>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u></p> <p>②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u>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총회의 인준을 얻어</u>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p> <p>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이사 4년</p>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2. 감사 2년 <u>다만,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u>(개정 2011.03.08.)(개정 2012.06.04.)</p>	<p>2. 감사 2년 <개정 2011. 03. 08., 2012. 06. 04., 2017.09.15></p>	<p>2. 감사 2년<개정 2011. 03. 08., 2012. 06. 04., 2017.09.15.> <u>다만,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u>(개정 2011.03.08.)(개정 2012.06.04.)</p>
<p>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u>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u>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u>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u>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7.09.15>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u>목사와 장로 중에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한 자로</u>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u>총회인준을 얻어</u>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총회인준을 얻어</u> 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u>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u> 선임한다.</p>	<p>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u>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u> 선임한다. <개정 2017.09.15></p>	<p>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u>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u> 선임한다.</p>
<p>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u>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③ <삭제></p>	<p>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u>이사 중에서</u> 취임한다.<개정 2017.10.26> ② <u>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개정 2017.09.15> ③ <삭제></p>	<p>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u>이사 중에서</u> 취임한다.<개정 2017.10.26>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u>1회 연임할 수 있다.</u> ③ <삭제></p>
<p>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u>총회인준을 얻어</u> 관할청의 인가를</p>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 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귀속된다.</p> <p>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명</p> <p>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p>	<p>법인이사회 개정(2017)</p> <p>제45조 (직위의 해제) ① 없음. 삭제된 것으로 보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p>	<p>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p> <p>받아야 한다.</p> <p>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 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귀속된다.</p> <p>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약간 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2인을 선출한 후, 예비법기로 확정하여 총회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p>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개정 2017.09.1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p> <p>③ 없음, 삭제된 것으로 보임</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7.09.15.></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p> <p>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09.15.></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p>	<p>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7.09.1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p> <p>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p> <p>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2017.09.15.)</p> <p>⑥ 교원에게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7.10.26.></p> <p>⑦ 삭제 <2017.10.26> <개정 2017.09.15></p> <p>⑧ <u>없음, 삭제된 것으로 보임</u></p> <p>제47조의2 (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제4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6]</p>	<p>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p> <p>※ 사립학교 법과 거의 동일함. 6항이 빠졌음.</p> <p>제47조의2 (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제48조(명예퇴직수당) 교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두며 명예퇴직</p>	<p>제47조의3 (의원면직의 제한) <u>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정관 제4관 제2절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p>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10.26]</p>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제4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6]</p> <p>※ 사립학교 법과 거의 동일함.</p> <p>제47조의3 (의원면직의 제한) <u>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정관 제4관 제2절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p>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10.26]</p> <p>제48조 (퇴직수당 등) 교직원 퇴직제도를 두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p>

종 전	법인이사회 개정(2017)	제103회 총회결의 후 개정안
<p>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p> <p>제4관 복무 (개정 2013. 05. 10.)</p> <p>제4절 사무직원</p> <p>제88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8급은 58세, 9급은 55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경우는 58세로 한다. (개정 2013. 11. 08.) (개정 2014. 06. 05.)</p> <p>제8장 보 칙</p> <p>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p>		<p>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단, 필요시 희망퇴직에 관한 세칙을 별도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p> <p>제88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u>6급 이하는 60세로 한다.</u>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경우는 <u>60세로 한다.</u></p> <p>제10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되, <u>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u></p>